

일자리함께하기지원

● 사업개요

일자리함께하기 제도*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

* 주근로시간 단축, 교대제 도입확대, 실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순환제 등

● 지원요건

-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: 근로기준법 개정(법률15513호)에 따라 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
* 주 노동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('18년 7월)
- ② 교대제 도입·확대 :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(4조 이하에 한함)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
- ③ 실 근로시간 단축제 :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
- ④ 일자리 순환제 :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

● 주 근로시간 단축제

신규채용 인건비

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, 1~2년 지원

근로자 수	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①		조기단축기업②	노선버스업종③
	1명 당, 1개월, 지원금액, 지원기간			
500명 초과	60 만원, 1년		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/ 이후 40만원, 2년	60만원, 1년
300~500명	제조업	80 만원, 2년		
	기타업종	60 만원, 1년		
300명 미만	제조업	80 만원, 2년	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/ 이후 80만원 (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은 최소 2년, 기타 업종은 최소 1년)	80 만원, 1년
	기타업종	80 만원, 1년		

임금감소분 보전

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
월 최대 40만원, 1~2년 지원

* 사업주 보전임금의 80% 한도

*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
(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)

근로자 수	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①		조기단축기업②	노선버스업종③
	지원기간			
500명 초과	-		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, 최소 2년	2년
300~500명	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	2년		
	기타업종	1년		
300명 미만	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	2년	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,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, 기타업종은 최소 1년	
	기타업종	1년		

- ① 개정 근로기준법(법률15513호)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
- ② 조기단축기업이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
- ③ 노선버스업종이 조기단축할 경우 조기단축기업의 예에 따라 지원

● 교대제 개편, 실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

구 분		증가근로자 인건비	임금보전
		1명 당, 1개월, 최대금액	
비제조업	우선지원 대상기업	80 만원, 1년	40 만원, 1년
	중견기업	40 만원, 1년	40 만원, 1년
	대규모기업	40 만원, 1년	-
제조업	우선지원 대상기업	80 만원, 2년	40 만원, 2년
	중견기업	40 만원, 2년	40 만원, 1년
	대규모기업	40 만원, 1년	-

* 사업주 보전임금의 80% 한도

* 임금보전은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국번없이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
- 부산고용복지+센터 : 051-860-1923~7
051-860-1931
051-860-2072
051-860-2100
- 부산동부고용복지+센터 : 051-760-7210~5
- 부산북부고용복지+센터 : 051-330-9951~5